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645
----------	-----

제출년월일 : 2000. 10. 1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사유

청소년 조직의 강화와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제정내용

- 가. 상담실 명칭 및 위치. 설치기준 (안 제2조, 제3조)
- 나. 상담요원등의 구성 및 자격과 임용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다. 상담요원등의 신분보장, 복무, 면직, 징계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 다. 상담요원등의 보수규정(안 제10조)
- 마. 상담실 운영방법 및 위탁운영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바.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사. 상담실의 상담방법 규정(안 제18조)
- 아. 상담요원등의 경력산정 기준(안 제20조)
- 자. 기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준용규정(안 제21조)

3. 참 고 사 항

○ 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61조(지방청소년상담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63조(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
- 경남도 체청 82500 - 10733(2000. 6. 9)“2000년도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계획“ 및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제정 표준(안)

○ 입법예고 :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에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사무실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설치기준) 청소년상담실은 사무실,전화상담실,면접상담실,집단상담실,상담대기실,심리검사실등의 시설을 100㎡ 이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상담 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 관련 상담
4.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사업
7.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8.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등 청소년 상담 관련 업무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요원등의 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상담원1명,행정원1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2인이내의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 하거나 청소년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상담원 및 행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상담실장의 직무)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실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연령은 상담원·상담보조원 35세이하,행정원은 30세이하로 한다.
3. 상담원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상담실 직원은 제11조,제19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퇴직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③상담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은 상담원 58세, 상담보조원·행정원 56세로 한다.

제9조(상담원등의 복무) ①상담원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며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야간상담 시간은 하계 18:00 ~ 21:00로, 동계는 17:00 ~ 21:00로 한다.
2. 야간상담실을 실시할 경우 익일 오전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정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해 필요할 때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면직)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2.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이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상담실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매년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③군수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상담실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청소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관련 전문가,대학교수,청소년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청소년관련 종사자,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문제점 협의
3.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협의회는 년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 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방,전화,사이버,서신,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집단상담,전화녹음상담

제19조(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는 고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실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상담원등 임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상담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사업)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등】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대학원의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 ·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 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자
상 담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사업)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등】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 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자
상담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워드가능자(행정업무 및 상담보조 가능자)
행 정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이상자로서 행정 또는 상담보조 업무 수행 가능한 사람으로서 전산 WP 3급이상 자격을 소지한자

1. 대학원은 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원에 한함.
2. 상담관련 분야는 청소년기본법 관계규정에 의함
3. 상담관련 실무 경력은 전임 경력에 한함

경 력 산 정 기 준 표

직 종 별	구 분	경 력	환산 비율
상 담 직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임강사 이상 경력 · 박사과정 이수 연한(3년한) · 석사과정 이수 연한(2년한) · 대학 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요원 이상 근무 경력(석사이상 과정 이수후의 조교경력 포함) · 군경력(의무복무기관에 한함) ·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공공상담 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시간강사(주당 8시간 이상) ·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 대학 상담기관 및 관련학과의 조교 경력 	80%
	“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시간강사(주당 5시간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50%
상담 보조원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업무의 실무 경력 · 석사과정 이수연한(2년한) ·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전문대학과정 2년한,학사 과정 4년한) · 군경력(의무복무기간) 	100%
행정요원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경력 · 동일 직종의 실무 경력 · 석사과정 이수연한(2년한) ·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전문대학과정 2년한,학사 과정 4년한) · 군경력(의무복무기간)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직종의 실무 경력 	80%

1. 초임 상한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2000. 1. 1 기준)
2. 경력산정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
3. 관련학과는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사업)학,아동(복지)학 등